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7. 1. 29.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수정이유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별표중 재정자주도 산식의 오류를 시정하고자함.

수정주요내용

1. 조문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안에서 사업별료” 삭제(안 제8조제1항).
2. 재정자주도 산식에 “재정보전금”을 삽입하여 산식의 오류 시정(별표).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도”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중 재정자주도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text{- 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전금 兪통교부세}}{\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보조금”이라 함은 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과 시군에 교부하는 자금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2. (생략)</p> <p>3. (생략)</p> <p>제4조(보조대상) <u>도지사</u>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 ----- ----- ----- ----- ----- ----- -----</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보조대상)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 (개정안과 같음)</p>

제8조(시·군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의 범위 안에서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별표]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

$$\text{- 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text{보통교부세}}{\text{일반회계예산규모}} \times 100$$

제8조(시·군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

$$\text{- 재정자주도} = \frac{\text{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text{재정보전금} + \text{보통교부세}}{\text{일반회계예산규모}} \times 100$$